

제2세션
14:15-15:35

302호

KAKAO 후원 기획 세션

인터넷 안전과 자율규제

사회 : 김영주(한국언론진흥재단)

1. 보편적 안전과 특수한 안전 사이: 호주 온라인 안전법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 : 홍남희(서울시립대)

토론 : 오연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민정 (한국외대)

202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정기학술대회 카카오후원세션

보편적 안전과 특수한 안전 사이

호주 온라인 안전법 사례를 중심으로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배경 및 목적

- 빅 테크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각 국가별로 유사한 지형의 위험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규제에서도 비슷한 논의 지형이 펼쳐지고 있음
 - 역외 플랫폼의 효율적 규제 문제, 플랫폼 기업의 특성과 국가 규제, 자율규제/내용규제 문제
 - 혐오표현, 허위정보, 테러 정보, 성착취 콘텐츠 등의 규제 문제(민주주의 파괴, 차별 및 인권 관점)
 - 아동, 청소년의 기술 의존도 증가와 위험 증가(성착취 가, 피해, 사이버불링, 청소년기 우울증과 소셜 미디어 부정적 영향 등)
 - 독점과 초연결성으로 인한 파괴력: 다면 시장의 성격, 많은 행위자들이 영향
- 취약층 대상 피해 사례 및 범죄와의 연관성 증가: 국가 개입 필요성
- 기술 발전에 따라 인구 일반의 온라인 안전 문제 대응 필요성: 보편적 안전의 문제로 확장
- 기술 기업의 책무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 증가

초연결사회와 온라인 위험 : 기술문화적 특성과 새로운 위험들

- **상시적 연결성**
 - 온, 오프라인의 경계 사라짐, 온라인 피해는 일상을 침해, 피해의 상시적, 지속적 특성
 - 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며, 복구가 어려움.
 - **확산 가능성(spreadability) (Jenkins et al., 2018)**
 - 콘텐츠의 확산 속도(실시간성), 범위(전지구적 확산)
 - **윤리적 감각의 쇠퇴**
 - 온라인의 명성과 주목, 수익화 가능성. 비윤리적 행위를 수익화 수단으로 삼는 사례 증가.
 - 온라인 공간의 동종 극화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어려움
- => 새로운 위험의 특징과 내용, 플랫폼 서비스와 기술의 특징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및 거버넌스 체계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플랫폼 특징과 책무성(accountability)

- **매개자(intermediaries)와 콘텐츠 퍼블리셔의 하이브리드 성격을 갖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van Dijck, Powell & Waal, 2018)**
 - 이용자들을 직접 연결하고, 선별된 수용자에게 메시지 전송
 - 콘텐츠 호스팅, 조직화, 검색가능하게 하는 역할: 알고리즘으로 메인 화면 배치, 개인 맞춤형 추천 등
 - 이용자가 플랫폼에 머물도록 하고 광고에 대한 주목과 개인 데이터 교환
 - 대인간 '텔레' 커뮤니케이션이자, 방송처럼 흐름(flow)에 참여하게 함(Gillespie, 2018, p.41; 이희은, 2019)
 - 다면 시장: 이용자 표현의 호스트(프로필, 댓글, 리뷰 등)/새로운 종류의 노동자와 브로커/상업적 교류/금융 등

플랫폼 특징과 책무성 담론

- 플랫폼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van Dijck, Powell & de Waal, 2018)
 - 데이터 구조,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형태로 테크놀로지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상업적 전략들, 개인의 이용자 실천, 기업, 국가 제도, 사회조직 등과의 연관성
 - 특징: 데이터화, 상품화, 선별
 - 특정한 것을 가시화하고 다른 것을 감추는 알고리즘적 필터링 과정
 - 일상과 공적 담론의 조직화
 - 우리의 참여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 구성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음(Gillespie, 2018)
 - 코드화된 구조는 우리의 연결, 창작, 상호작용 특징을 변화시킴
- => 기술 발전에 윤리적 결정 개입시킬 수 있을까? 플랫폼의 이윤 추구하고 공적 가치가 배치된다면, 공적 가치의 추구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국가의 규제 목적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까?

내용규제와 자율규제의 문제 1)

- 내용규제: 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불법/유해 정보, 1급/2급 콘텐츠 등
 - 폭력, 잔혹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등
 - + 기술규제 필요성: 개인생산 콘텐츠, 알고리즘 추천 등으로 위험 요소 상존, 침투성 증가/기술 매개 위험을 기존 내용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짐 -> 안전 디자인, 인공지능 도입한 규제 등의 선제적 조치 필요성과 사후적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기술 기업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음
 - + 데이터 보호 문제 (ex.메타, 카카오 등)

내용규제와 자율규제의 문제 2)

- **자율규제의 논의를 넘어서: 플랫폼 책임과 국가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자율규제 논의가 인터넷 내용규제 논의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 옴(김민정, 2021b, p.16)
- 정부 개입 정도 혹은 정부와 사업자간 협력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 유형 분류/강제성 정도
- 감사받지 않는 자율규제, 감사받는 자율규제(audited self-regulation), 공식 자율규제, 공동규제 (Marsden & Meyer, 2019; 김민정, 2021a, p.7 재인용)
- 산업 규모에 비례한 책임
- 산업 참여자뿐 아니라 시민단체, 학부모, 정부 등 유관 행위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바람직

호주의 온라인 규제: eSafety Commissioner

- **특수한 안전에서 보편적 안전으로 확장**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권리보호 증진법(Enhancing Online Safety for Children Act, 2015)
- 동법 개정 통해 아동, 청소년 삭제하고 적용대상을 일반 이용자로 확대(2017)
- 온라인 권리침해 실태 조사분석, 피해예방 위한 교육 홍보 업무(정재하, 2018)
- **생애주기별, 연령별/정체성별 위험과 경험의 세분화**
- 교육자, 학부모, 청소년, 아동, 여성, 노인, Diverse Group(소수 민족, LGBTQI+), 산업
- **온라인 안전과 취약층**
- 팬데믹 시기 아동 성폭력, 성착취 사례 증가/호주 범죄 유형의 2위 차지
- Image-based Abuse와 젠더 기반 폭력의 연계

온라인 안전과 아동, 여성 폭력 근절 국가 전략

- 호주의 온라인 안전은 아동, 여성 대상 폭력 근절 위한 국가적 전략과 연계되고 있음

1) National Strategy to Prevent and Respond to Child Sexual Abuse 2021-2030

- 아동 보호를 위한 eSafety Strategy 2022-25
- 학교 커뮤니티 참여 계획(2020.2-): eSafety는 학생, 교육자, 학부모 대상 홍보 위해 학교 시스템과 지속적 협력
: 아동 성착취 포함 온라인 위험, 아동 대상 온라인범죄 신고 메커니즘에 대한 대중 인식 고양 위해 '학교용 eSafety 툴킷' 활용

2) 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2022-2032

- 예방, 조기 개입, 반응, 회복과 안정
- 젠더 불평등, 젠더에서 차이(gap)를 줄이는 것을 강조
- 젠더 기반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의 근절/피해-생존자에 초점
- Sexist, homophobic, transphobic 시각 근절을 위해 소년과 남성 집단에 대한 지원 요청과 폭력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공동체의 사고방식과 태도에 대해 다룰 것을 권장
- 온라인 위험이 온라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구성되고 있음을 인식/다른 정책과의 연계 가능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1) 제정 배경

- 호주 경쟁감시단의 디지털 플랫폼 조사에서 페이스북, 구글 규제 강화 권고
- 유럽, 영국, 미국 등의 규제 기구가 빅 테크 규제 방법 모색
- 페이스북 내부 문서 고발(프란시스 하우겐, 2021.9)

“페이스북 상품이 어린이들에게 해를 입히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해 오늘 여기까지 왔다”

“회사 중역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천문학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방치할 것”

- 영국 소녀 몰리(Molly): 인스타그램 자살, 자해 사진의 청소년 영향
- 호주 범죄 순위 2위가 아동 대상 성착취 사례

Taylor, J. (2021.10.21) What is the Australian government doing to crack down on big tech, and why?, *The Guardian*.

기술 예외주의는 끝나야 한다

- 팬데믹 시기 백신 개발처럼 안전한 온라인 세상 위한 유일한 방법은 플랫폼이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 행위가 되는 것
- 기술 기업 책임 강화하는 법안 마련 동향: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 유럽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참고
- 기술회사가 정밀 광고로 소비자를 타깃팅할 수 있다면 전세계 어린이 대상 불법 콘텐츠 및 행위 또한 표적 삼을 수 있다
- "오늘날 우리는 차를 탈 때 안전벨트가 내장돼 있고 잠금방지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임에도 강요했고, 이제는 국제 표준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술 예외주의의 시대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 "회사는 위험을 평가한 다음 사후적 고려가 아닌 사전적 고려로 보호의 기능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안전벨트를 매고 디지털 가이드라인을 세워라"
-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인권 경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흑백 문제가 아니다."



eSafety Commissioner Inman Grant

<https://www.esafety.gov.au/newsroom/blogs/online-world-needs-vaccine-its-own-0>
<https://www.innovationaus.com/era-of-tech-exceptionalism-must-end-esafety-commissioner/>

호주 온라인 안전법 주요 내용: online harm

- 온라인 피해 유형 4가지: 18세 이상 성인 대상 사이버 학대도 포괄

1) 사이버불링

-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인터넷 사용해 모욕, 희롱, 협박, 위협 가하는 것
- 게시물, 댓글, 문자 메시지, 채팅, 라이브 스트리밍, 밈, 이미지, 비디오, 이메일 통해 발생
- 소셜 미디어, 게임,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 및 앱 서비스는 물론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
- 아동 위험 최소화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신고시스템 운영, 피해자 및 가족 정신건강 및 기타 지원 서비스에 연결

2) 성인 대상 사이버 학대

- 18세 이상 성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온라인 게시물
- 고의적으로 불만 조성 위해 허락없이 전화번호, 주소 등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 가짜 계정 통한 위협, 허위계정 통한 사칭행위 포함
-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가해자 처벌 조치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긍정적 온라인 경험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호주 온라인 안전법 주요 내용: online harm

3) 이미지 기반 학대

- 당사자 동의 없이 사적 이미지 및 동영상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
- eSafety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콘텐츠 삭제 요구
- 피해자는 eSafety에 신고하고 eSafety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 및 시정요구 가능. 해당 이용자에게 이미지 삭제 직접 요구 가능 등 직접적 조치 가능
- 공식 경고 및 민사상 처벌 등 강제 조치 가능

4) 불법 및 제한 콘텐츠

- 불법 콘텐츠(illegal content): 테러리즘 행위, 아동 성학대, 극단적 폭력행위 게시 및 조장 자료 포함해 보는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할 가능성 있는 콘텐츠
- 제한 콘텐츠(restricted content): 가상 성행위나 나체의 상세한 묘사, 강도 높은 폭력 묘사 등 아동 접근 안되는 콘텐츠

호주 온라인 안전법 주요 내용: 피해 유형 및 대응방법

유형	대응방법
심각한 사이버불링이나 성인 사이버 학대를 경험했는가?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를 신고하라 - 만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플랫폼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거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eSafety에 신고할 수 있다. - 일반 사이트, 앱, 게임의 콘텐츠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esafety.gov.au/esafety-guide 를 참고
누군가 동의 없이 당신의 사적 이미지를 공유했는가?	eSafety에 곧장 신고하라 - 신고는 eSafety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esafety.gov.au). 온라인 플랫폼에 먼저 신고할 필요 없이 eSafety에 바로 신고할 수 있다. - eSafety가 플랫폼에 삭제 요청이나 시정요구를 하며, 온라인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만 한다.
불법 혹은 제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보았는가?	관련 콘텐츠를 eSafety가 조사하도록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는 삭제 조치 될 수 있다.

특징: eSafety 권한 강화와 사업자 책임

■ eSafety 권한 확대:

사업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접근 막도록 요구하거나 삭제 요구 가능/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 가능

■ 호스팅 장소 불문 규제 가능: Ex. 소셜 미디어, 게임, 채팅 앱, 이메일, 메시지(휴대폰 문자 메시지 포함)

■ 온라인 안전 보호 대상: 모든 호주인 대상/모든 호주 내 서비스(호주 내 거주하는 사람이 end-user인 서비스)

■ 사업자 의무사항 추가: 온라인 안전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BOSE: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

- 이용자 보호 위해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및 학대 행위에 선제적 대응
- 괴롭힘이나 학대 등 유해 행위 및 콘텐츠 최소화하도록 하며
- 신고를 위한 명확하고 편리한 시스템 갖출 것 요구
- 호주 '커뮤니케이션 도시 인프라, 도시와 예술 장관'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결정 가능.
- eSafety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BOSE 충족 여부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 권한/BOSE 준수 여부 감독, 이 행하지 않는 사업자명 공개 가능
- 보고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처벌 가능

호주 온라인 안전법 주요 내용: 불법, 제한 콘텐츠

■ 1등급(class 1) 콘텐츠

- 합리적인 성인이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도덕, 품위 및 예절의 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성, 약물 남용 및 중독, 범죄, 잔혹, 폭력 또는 역겹거나 혐오스러운 현상을 묘사, 표현하거나 취급하는 콘텐츠
- (성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성인, 18세 미만 어린이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 혹은 설명하는 콘텐츠
- 범죄나 폭력을 조장·선동·지시하는 콘텐츠

■ 2등급(class 2)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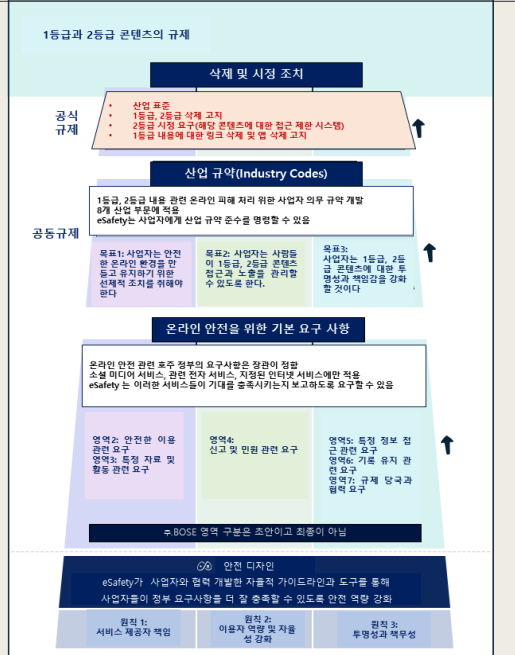
- 국가 등급분류 체제에서 X18+, R18+로 분류되는 콘텐츠로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 eSafety에서는 2A, 2B 등급으로 나뉨

2A 등급: 폭력, 성폭력이나 강제가 없고 페티시나 의도적 비하 행위가 없는, 합리적인 성인 간 실제 성 행위를 담고 있는 '포르노그래피'를 의미

2B 등급: 가상 성 행위, 누드, 폭력 혹은 약물 이용 등에 대한 매우 강력한 묘사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콘텐츠

특징: 1,2등급 콘텐츠 규제 체계

- **공식 규제**
 - 1등급 콘텐츠 링크 삭제 및 앱 삭제 고지
 - 2등급 시정요구(접근제한 시스템)
 - 1, 2등급 삭제 고지
- **공동 규제**
 - 산업규약: 1, 2등급 콘텐츠 관련 피해 처리 위한 의무 규약 개발, eSafety 준수 명령 가능
 - 온라인 안전 위한 기본 요구사항(BOSE): eSafety가 보고 요구 가능
- **안전 디자인(Safety by Design)**
 - 사업자와 eSafety 협력 개발한 자율적 가이드라인과 도구
 - 안전 확보 위한 선제적 기술 설계
 - 서비스 제공자 책임, 이용자 역량 및 자율성 강화, 투명성 및 책임성



특징: 산업 규약(industry code)의 등록 의무

- **산업규약 등록 의무**
 -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자메시지 서비스, 검색엔진, 앱 배포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서비스 접근 장비 제조 및 공급업자, 설치 및 유지 사업자 등 총 8개 부문이 불법, 제한 콘텐츠 처리 관련한 산업 규약 eSafety에 등록 의무
 - 사업자들이 산업규약 준수하도록 민사처벌 및 벌금 명령으로 강제
- **산업규약 내용**
 - eSafety는 2021.9 산업규약 포함될 내용, 디자인, 개발, 등록 및 관리에 대한 11가지 정책 입장과 위험 및 결과기반의 eSafety 모델 제시함 (예시)
 - 1) 산업 모든 부문이 서비스에서 유해 콘텐츠 관련 안전 이슈 인식하고 그 과정 발전시켜야 함
 -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아동 접근 감독, 통제하는 방법을 부모나 성인(양육자)에게 알려야 함
 -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신고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알려야함
 - 4)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회사 정책에 맞게 신고 처리하는 절차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
- **기술의 안전화, 선제적 설계(Safety by Design)**
 - 선제적 조치, 접근과 노출 관리, 1, 2등급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감 강화

코드 초안 등록 사례

- 빅 테크 대표하는 DIGI, Australian Mobile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 Interactive Games and Entertainment Association 등 6개 산업 협회가 class 1 자료에 대한 코드 초안 발표
- **최소 준수 수준 포함**
 - 소셜 미디어 서비스 회사는 호주인 안전에 심각하고 즉각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아동성착취 콘텐츠 혹은 친 테러 콘텐츠를 24시간 이내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함
 - 비공개 통신 및 암호화된 메시징 서비스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또는 기타 식별자 사용해 서비스에 등록
 - 암호화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서비스에서 식별된 아동착취 자료 및 테러 방지 자료에 대해 당국에 24시간 이내에 혹은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함
 -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어린이가 부모 혹은 보호자 동의 없이 인터넷 운송 서비스 받을 수 없게 해야 함
 - 이용자에게 호주 법률 위반 자료 생성하지 말도록 고지하고, 어린이 성착취 및 성적 행위 차단 위한 프로토콜 개발에 eSafety와 협력해야 함


<https://www.innovationaus.com/online-industry-reveals-plan-to-regulate-internet-safety/>

안전 디자인의 중요성 강조

- **3P :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선제적 변화(Proactive change)**
- 속도, 이윤 중심 기업 활동에서 이용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예측/감지/제거)
- 문화적 변화와 구조적 변화 중요성
- 기술 생태계의 모든 행위자들의 중요성: 산업, 시민단체, 활동가, 학부모, 청소년, 아동
- **Safety Initiative Principles**
 - 서비스 제공자 책임: 리스크 평가, 유해 노출 감소
 - 이용자 힘돋우기와 자율성
 - 투명성과 책임성: 투명성 보고서, 안전 솔루션 관련 영향과 효과 데이터, 효과적 혁신 공유 및 채택
- **안전 디자인 대학 파일럿 프로그램**
 - 엔지니어, 컴퓨터 공학도, 법학도, 기업가 등 미래 세대 학생 위한 커리큘럼
 - 2021년 많은 대학에서 세미나, 강연, 팟캐스트,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학제와 수업 등 시범운영

<https://www.esafety.gov.au/industry/safety-by-design/principles-and-back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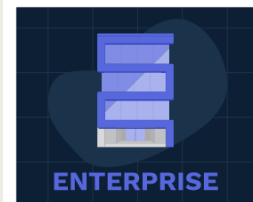
안전 디자인 평가 도구



START-UP

Designed for early-stage companies (0 to 49 employees worldwid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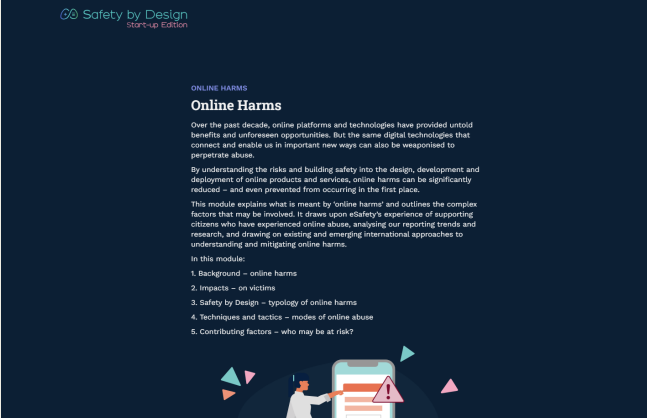
ENTERPRISE

Aimed at mid-tier (50-249 Employees worldwide) and enterprise organisations (250+ employees worldwide).

→

<https://www.esafety.gov.au/industry/safety-by-design/assessment-tools>

안전 디자인 평가 도구: 스타트업 버전



00 Safety by Design
2021-10 Edition

ONLINE HARMS
Online Harms

Over the past decade, online platforms and technologies have provided untold benefits and unforeseen opportunities. But the same digital technologies that connect and enable us in important new ways can also be weaponised to perpetrate abuse.

By understanding the risks and building safety into the design,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online products and services, online harm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 and even prevented from occurring in the first place.

This module explains what is meant by 'online harms' and outlines the complex factors that may be involved. It draws upon eSafety's experience of supporting citizens who have experienced online abuse, analysing our reporting trends and research, and drawing on existing and emerging international approaches to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online harms.

In this module:

1. Background – online harms
2. Impacts – on victims
3. Safety by Design – typology of online harms
4. Techniques and tactics – modes of online abuse
5. Contributing factors – who may be at risk?

비판

■ 업계의 혼란 주장

- 산업 그룹 DIGI(구글, 메타, 애플 등)는 이미 다양한 규제 법률안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복된 규제 우려. "지속적이고 통합된 법안"의 필요성
- 메타: 중복되고 일관되지 않은 규제, 규제 대상 관련 모호함 호소(ex. 성적 관행으로서 페티시? 무조건 삭제?)
- 구글: 이미 연령확인 시스템, 트롤링 방지 법안 등에 참여, 중복 규제 우려
- 스냅: 매우 복잡하고 혼잡한 환경. EU나 영국처럼 집중적, 포괄적 프레임워크 고려
- 트위터: 최근 2개월 만에 걸친 조사가 정신건강, 알고리즘, 신원확인 등 관련 기준에서 제기된 광범위하고 복잡한 문제 완전히 다루지 못할 것이므로 조사 연장 요청

■ 국가 주도의 규제 방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 우크라이나 등 전쟁이나 내전 상황의 국가에서 적용될 경우 정치적 검열 우려

<https://www.innovationaus.com/big-tech-says-it-is-confused-by-australias-growing-online-safety-laws/>

결론 및 함의

- 국내 자율규제 및 내용규제 중심의 논의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계기
- 산업 중심의 폐쇄적 자율규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 필요
- 1, 2등급 콘텐츠 규제 포함해 기술 행위유도성에 대한 성찰적, 선제적 접근 유도
-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한 강력한 정책 집행, 아동 및 여성 폭력 관련 국가 정책과 연계한 통합 조치 (특수한 취약층 보호 주력) + (인구 보편의 안전 문제로 확장)
- 기술 환경 업데이트하고 관련 피해를 업무 관할로 포섭: 딥페이크, 물입기술 등 신기술에 대한 입장 표명
- 기술 기업 책무성 강조
- 역외 플랫폼 규제 위해 국가 주도의 규제 체계 필요. 강제성의 수반
- 기업 규모별 비례적 조치 마련
- 이용자 안전의 실질적 책임자로서의 기술 기업/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위자로서 기술 기업
- 피해와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안전 디자인 등을 통한 선제적 조치의 마련과 구조적 변화
- 피해와 위험에 대한 조사, 대응, 온라인 안전 확보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대중 공개: 투명성 보고서, 공개적 조치, 법적 조치 등

참고자료

- 김민정 (2021a). 유럽연합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자율규제 사례 고찰. <언론과 법>, 19(1), 193-230.
- 김민정 (2021b).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1), 7-54.
- 이회은.(2019).유튜브의 기술문화적 의미에 대한 탐색 : '호름'과 알고리즘 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언론과 사회,27(2),5-46.
- Gillespie, T. (2018). *Custodians of the Internet*. Yale University Press.
- Jenkins, H., Ford, S., & Green, J. (2013). Spreadable media. In *Spreadable Media*. New York University Press.
- Van Dijck, J., Poell, T. & de Waal, M. (2018). *The Platform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 <https://www.esafety.gov.au/industry/safety-by-design/principles-and-background>
- <https://www.esafety.gov.au/newsroom/blogs/online-world-needs-vaccine-its-own-0>
- <https://www.innovationaus.com/era-of-tech-exceptionalism-must-end-esafety-commissioner/>
- <https://www.innovationaus.com/big-tech-says-it-is-confused-by-australias-growing-online-safety-laws/>

감사합니다.